*출처: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 III. 항목별 자료 작성 방법 → 5. 신규채용 현황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이전지역 인재의 범위

※ 아래 참고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법령 등이 우선함

〈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이전지역 인재의 정의 〉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 · 경기 ·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 · 중퇴한 자 또는 재학 · 휴학 중인 자

□ **(이전지역 인재)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비수도권 지방학교〉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1)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 · 경기 ·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예시) 고려대 세종캠퍼스 ,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 예 시 〉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지방대학에 해당함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 24조상의 분교가 아님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다.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1)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이전 지역 학교〉

가. 이전지역 학교

□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본교

(2) 「고등교육법」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이원화 캠퍼스)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
(3)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나. 이전지역 학교 제외 대상

(1)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
㉮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2)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

다. 그 외의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1)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2)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예 시 〉

〈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 대학 졸업: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예정): 해당

〈본교의 위치와 분교 · 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
◦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
◦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
*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 본교 학생은 부산,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비해당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 · 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비해당
◦ 이전지역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비해당

〈대학중퇴 후 다른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비해당
◦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비해당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 · 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해당
◦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비해당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 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해당
◦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비해당

※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참조